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221호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에 따른 공사비산정기준의 고도화 및 관리기관의 업무 저변확대를 위해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국토교통부 위임전결규정에 맞게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리기관 출연금계정 예산항목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기부 고시)’의 명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스마트건설(ICT건설, 모듈러시공, BIM단가 등) 원가산정 기준관리, 유지관리공사(노후인프라 성능개선 등) 원가산정 기준관리, 설계용역대가 선진화 조사 및 연구(BIM 설계용역 대가기준 마련 등), 공사비산정기준 민원 신청·처리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등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관장업무 근거를 마련(안 제82조제2항)

나. 전문가협의회 → 분과위원회 및 그룹별위원회(위원장 과장) → 종합심의(위원장 정책관) 순으로 운영하였으나, 국토교통부 위임전결규정에 맞게 종합심의 위원장을 과장으로 변경하고, 분과위원회 및 그룹별위원회를 삭제하여 심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안 제87조제1항, 제88조제2항, 제93조제2항, 제97조, 제98조제1항, 제98조제3항, 제99조제1항, 제99조제3항)

다. 관리기관 출연금계정 예산항목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기부 고시)’의 시행에 따른 출연금 비목별 계상기준의 명칭을 반영함(안 별표1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 전자우편 : hduck98@korea.kr

- 팩 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전화 044-201-3570, 35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